

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식품
위생농업과)

1. 제안이유

-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 및 「상업등기규칙」 제26조에 따라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은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명칭이 변경(2008년 제정)
- 법령 제·개정 이후 자치법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맞게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가 개정된 법령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,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